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의결사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과의 법령간 정합성을 고려

하여 유치원 공시항목 중 원아로 표현한 부분을 유아로 수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사립학교 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친족관계 교직원 수를 공개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별 학생선발 관련 평가환경을 공개하고,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수혜율을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문 신설(제9조의2 제4항 신설)

나.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를 “학교장 자체해결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으로 공시정보 범위 수정(별표1 제11호 다목)

다.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중 원아로 표현된 부분을 유아로 변경하고자 공시정보 범위 등을 수정(별표1의3 제2호 가목)

라. 대학별 학생선발 전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임사정관 현황” 및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의 공시정보 범위 추가(별표2 제3호 나목, 다목)

마.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별표2 제8호 타목)

바. 대학 신입생의 입학전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입학전형 유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별표2 제12호 너목)

사.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전담 기구의 운영 정보를 공시하고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운영 현황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으로 공시정보 범위 수정(별표2 제14호 타목)

아.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의 공시범위 신설(별표2 제14호 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제11호 다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의결과”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으로 한다.

별표1의3 제2호 가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연령별 학급수ㆍ원아수”에서 “연령별 학습수ㆍ유아수”로 하고, 비고란 4의 “원아”를 “유아”로 한다.

별표2 제3호 공시정보 범위를 “모집요강(편입학 포함)”를 폐지하고, 가목을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나목을 “전임사정관 현황”, 다목을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로 한다.

별표2 제12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입학전형 유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구간비율)	대학	연1회	8월

별표2 제8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사립 대학	연1회	8월

별표2 제14호 타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성폭력ㆍ성희롱 전담기구 운영 현황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으로 한다.

별표2 제14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임원ㆍ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사립 대학	연1회	6월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③ (생략)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③ (현행)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1]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별표1의 3]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수·원아수	전체	연2회	4월, 10월

비고

4. 유치원 원비 현황은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 일체를 공시한다.

[별표1]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학교장자체해결등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별표1의 3]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수·유아수	전체	연2회	4월, 10월

비고

4. 유치원 원비 현황은 유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 일체를 공시한다.

[별표 2]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요강 (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 (편입학 포함) 나. 전임사정관 현황 다.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대학 대학 대학	수시 연 1회 연 1회	수시 6월 6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타.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사립대학	연1회	8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너. 입학전형 유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구간비율)	대학	연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타.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운영 현황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대학	연1회	10월
〃	하.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사립대학	연1회	6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통계과	
연 락 처	(044) 203 - 6320